'99군정질문 서면답변서

문화관광산림과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인 수 의원		
소관부서	문화관광산림과	답 변 자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제 목 : 관광진흥법 개정이유

□ 개정이유(관광진흥법)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였던 유원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며, 관광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외자유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던 유원시설업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이관하여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유원시설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법제3조제1항제6호,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30조 내지 제32조)

나. 관광숙박업등 일부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종전의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제4조제2항 및 제14조)

다. 관광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등 9개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법 제15조제1항)

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0조)

□ 개정이유(관광진흥법시행령)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이 개정(1999. 1. 21, 법률 제5653호)되어 관광숙박업등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관광산업의 변화·발전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개편하며,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의 관광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의 관광호텔을 종합관광호텔 및 일반관광호텔의 2종으로 구분하고 관광호텔중 호텔등급을 정하지 아니하고 오락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관광호텔은 일반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중저가 관광호텔인 일반관광호텔의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영 제2조제2호가목)

나.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규모와 안전성검사 여부에 따라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과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영업으로,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영업으로 함
(영 제2조제5호 및 제8조)

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종전에는 임원을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의 위치 및 면적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영 제9조)

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비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객실당 5인이상 1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회원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금액을

자율화하고 객실별 모집인원수에 대한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객실별로 2인이상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영 제25조제1항제3호)

마.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자는 공유지분·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외의 비용은 공유자 및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함(영제27조제1항제1호 및제3호)

바. 관광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57조제2항 및 제3항)

사. 종전에는 관광호텔의 경우 40실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하고 객실면적등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30실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하고 객실면적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등 관광호텔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함(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